

「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고교 무상교육 실시, 국가장학금 등 각종 장학제도 확대로 통리장자녀 장학제도의 실효성이 저조하여 중복지급 제한에 따른 장학금 차액 지급 기준 변경, 장학금액 상향을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통리장의 사기 양양 및 사업효과를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중복지급 제한에 따른 장학금 차액 지급 기준 변경(안 제4조제4항)
 - (당초)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→ (변경) 학기 등록금 총액
- 장학금액 상향(안 제6조)
 - 장학금액 : (당초) 100만원 → (변경) 200만원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통리장자녀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에 따른 장학금 차액 지급 기준 변경, 장학금액 상향을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통리장의 사기양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및 국가장학금 등 각종 장학제도 확대에 따라 구미시 통리장 자녀 장학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장학금 차액 지급 기준 변경 및 장학 금액 상향 등 현실에 맞는 장학금 지급과 공정성 제고 및 통·리장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학금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이를 관련 공고문이나 안내 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으며, 장학금 수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이해충돌이나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임.